



2024년 2호
2024.2.21.

금속노조 교육지

발행 전국금속노동조합 | 발행인 장창열 위원장 | 편집 교육실 ☎ (02)2670-9506 | 홈페이지 www.kmwu.kr

우리 조합비를 노동부에 공개하라고? 왜?

| | |
|----|---|
| 경과 | <p>2023.9월. [노조법 26조] 시행령 신설(개약) 조합비 공개를 정부가 제시한 양식에 맞게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강제</p> <p>2023.9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천인 이상의 단위노조 등은 노동부가 만든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으로 공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도록 함.</p> <p>2024년 1월. 노동부는 회계공시 후 한 발 더나가 사업장단위(분회까지)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라 추가 요구를 함</p> |
|----|---|

☞ 정부는 왜 갑자기 시행령까지 만들어 가면서 노동부 홈페이지 회계공시 양식에 조합비를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걸까요? 또, 상급조직이 회계공시에 응하지 않으면 조합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조합원들 볼모로 잡고 상급조직과 집행부를 압박하여 정부의 부당한 강압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민주노조 무력화 일타쌍피, 손 안대고 코풀기 시나리오

| | | | | |
|---|---|--|---|---------------------------------------|
| 조합비 쓰임이 문제있는 것처럼 호도해 도덕성 흠집 내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 | → | “너희가 손해보는 건 상급조직과 집행부 탓이다” 며 법은 정부가 개악하고 비판은 노조가 받도록 | → | 노동개악 등 친자본 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걸림돌인 민주노조 무력화 |
|---|---|--|---|---------------------------------------|

윤석열 정부의 뻔한 시나리오를 알고도 순순히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비 세액공제를 포기하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원 주머니 털겠다는 정부의 겁박에 맞서 당당히 투쟁하지는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가맹신하 노조들은 회계공시 시행령에 대해 정부의 노림수는 알지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고 탄압의 빌미를 주지 말자는 차원에서 회계공시에 대해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1천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계공시를 하니 자신감이 붙은 정부는 이제 조합원 명부를 내놓으라고 하며 대놓고 하나를 더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예상된 시나리오입니다.

정부의 너무나 뻔한 의도를 알고도 순순히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주노조를 길들이고 통제하겠다는 정부에 대항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순순히 물러날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잠시 적용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대놓고 조합원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우는 것이 민주노조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감세는 나서서 해주고 노동자들 얹은 호주머니 털겠다는 정부

윤석열 정부는 기업이나 부자들이 돈을 더 많아 벌게 해주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조합비회계 공시를 빌미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가뜩이나 얹은 노동자들 호주머니 털겠다고 합니다.

조합비는 정부 세금으로 지원받는 민간비영리단체의 회계와는 완전히 다른 100% 우리의 기금이고 투쟁의 무기입니다.

회계투명성은 정부 강요가 아닌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일입니다. 민주노총도 금속노조도 지금까지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사용에 대해 예산안을 승인받고 그 예산을 기준으로 사용해 왔으며 결산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왔습니다. 조합원 어느 누가 요구하더라도 언제든 조합비 사용 내역에 대해 모든것을 공개하고 보고해 왔습니다. 공정성, 도덕성, 투명성은 민주노조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세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의 기금에 대해 제대로 썼는지 부정은 없는지 정부가 운영상황을 감독하겠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부 돈 단 1원도 안들어 간 조합비에 대해 일반 공익단체처럼 보며 조합비 공개 안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거지입니다.

조합비를 공익성으로 보고 세금혜택을 적용해 온 취지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 사회 공공성과 복지를 늘리면 그것이 공익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의 피땀 어린 노동을 통해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통해 조합원들의 소득이 오르면 그만큼 정부 세금도 올라가는 직접세 인상 효과와 더불어 생활 수준 향상으로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도 잘되고 물건을 소비하며 내는 간접세도 상승되는 연쇄 효과를 냅니다. 이런 **노동조합의 공익성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치는데 마치 거꾸로 정부가 조합원에게 특혜를 줘 온 것인 양 호도하며 말 안 들으면 안해주겠다고 협박합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무시한 채 적반하장으로 조합비 장부 뒤지겠다는 정부에 대해 민주노조 답게 맞서야 합니다.

용어해설

연말정산은?

해마다 연말정산을 통해 우리가 낸 세금을 정산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매월 급여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선 소득세를 간이 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법령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카드사용 등 여러 가지 소비 금액 공제 등을 반영하여 한번에 최종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해서 환급받거나 더 내거나 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둘다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의 제도입니다.

차이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 줄 것인가 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차감함으로써 즉,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득을 줄여줌으로써 절세 혜택을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절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며 해당금액의 15%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치기부금(10만원이하), 조합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